

1. 개정 이유

신차 실내공기질 조사 시 국산차와 수입차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관리기준 초과 자동차에 대한 추가시험 및 추적조사 등 내설있는 시험·조사 근거를 마련하며, 연간계획 수립과 규정·대상 명확화 및 관련 기준 인용 내용 수정 등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가. 수입차 형평성 확보를 위해 직접 조사토록 조사대상, 측정대상, 확인

대상 등 대상자동차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5호, 제6호, 제7호)

- 조사대상자동차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5호)
- 조사대상자동차 중 직접 측정하는 측정대상자동차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6호)
- 조사대상자동차 중 제작사가 조사·제출하는 확인대상자동차의 정의 신설(안 제2조 제7호)

나. 차종별 조사차량의 대수를 늘려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시험 근거 신설(안 제6조의2)

다. 재발방지대책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적 차원의 조사로 추적 조사 근거 신설(안 제6조의3)

마. 연간사업인 점을 감안해 조사대상자동차와 조사 항목·방법·절차 등에 관해 연간계획을 수립토록 근거 신설(안 제6조의4)

바. 규정 적용대상 명확화 및 국제기준 준용 부분 명칭 변경, 기타 의미 명확화를 위한 자구 수정 등(안 제1조,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

별표2)

- 이 규정에 따른 신규제작자동차 및 대상자동차제작·판매자등의 정의 명확화(안 제1조, 제2조제1호, 제5조)
- 초소형차 제외 및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포함 등 조사대상자동차의 범위 개편(안 제3조)
- 국내외 관리기준의 명칭·내용 개정을 감안해 인용규정의 명칭 및 내용 수정(안 별표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특기할 사항 없음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신규제작자동차의”를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판매한 신규 제작자동차의”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동차 자기인증요령 등에 관한 규정”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제5호를 제3호·제4호로 한다.

1. “대상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에서 정하는 자기인증 능력의 기준에 미달하는 제작자 등은 제외한 규칙 제31조에 따른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제5호·제6호·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조사대상자동차”란 국내에서 판매되는 신규제작자동차로 측정대상자동차와 확인대상자동차를 말한다.

6. “측정대상자동차”란 당해 연도 자동차안전도평가 및 자기인증적합조사 대상차종으로 선정된 자동차 중 별표2에 따라 제작일로부터 28±5일 이내에 실내공기질 측정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작

일로부터 28±5일 이내에 소비자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자동차의 경우 소비자 인도시점 기준으로 측정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7. “확인대상자동차”란 측정대상자동차를 제외한 조사대상자동차로 대상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제작일로부터 28±5일 이내 또는 소비자 인도시점에 측정한 결과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하며, 국내에서 연간 500대 이하로 판매되는 자동차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를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승용자동차(초소형승용자동차 제외)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이며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특수형 제외)

제5조의 제목 “(자동차 제작·판매자등의 고려사항)”을 “(대상자동차제작·판매자등의 고려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을 “대상자동차제작·판매자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을 “대상자동차제작·판매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을 “대상자동차제작·판매자등”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오염물질을 채취하여”를 “측정대상자동차를 대상으로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확인대상자동차의 조사 결과를 검토하는 방식으로”으로,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을 “대상자동차제작·판매자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의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아 자료를 제출하려는 대상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별표2에 따라 대상 오염물질을 측정된 후 별표2의 [표2] 실내공기질 결과기록표와 측정에 관한 자료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1항의 모든 평가 대상 오염물질 중 어느 하나라도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내 내장재의 개선이나 대체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 할 수 있으며, 대상자동차제작·판매자등에게 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대책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추가시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권고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한 결과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대상자동차제작·판매자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상자동차제작·판매자등의 요청에 따른 추가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대상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제공하는 시험자동차 및 시험비용을 활용하여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동차제작·판매자등의 생산·출고시설에서 권고기준을 초과1한 자동차와 동

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무작위로 선정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추가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평가 대상 오염물질을 모두 측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추가시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추적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 또는 제6조의2에 따라 권고기준 초과가 발생한 자동차의 지속적인 추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해당 자동차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성능시험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대상자동차제작·판매자등의 협조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적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권고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와 동일형식의 자동차의 실내공기질 자체 측정 및 분석결과

2. 제6조제3항에 따른 권고 사항과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한 이행여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추적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4(연간계획의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권고기준 준수 확인, 제6조의2에 따른 추가시험, 제6조의3에 따른 추적조사를

하기 위해서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매년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한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조사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게 할 수
있다.

1. 측정대상자동차 대상 및 확인대상자동차 선정 기준 등 조사대상
자동차의 범위
2.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조사 항목·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추가시험 및 추적조사에 대한 사항
4.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중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
에 관한 규정」”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
로, “2019년 1월 1일”을 “2022년 7월 1일”으로, “12월 31일”을 “6월 30
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
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별표 2]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측정 방법

1. 목적

이 측정 방법은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만족 여부 확인을 위한 측정에 있어 측정의 정확성 및 그 절차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측정 조건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일반 사항

(가) 이 측정 방법에서 인용한 다음 규격은 이 측정 방법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 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Q 5002 데이터의 통계적 기술

KS M ISO 16000-3 실내 공기-제3부 : 실내 공기와 시험 챔버 공기 중 폼알데하이드와 그 외의 카보닐 화합물 측정-액티브 채취방법

KS I ISO 16000-6 실내 공기-제6부 : 흡착제 TENAX TA를 이용한 액티브 시료채취, 열 탈착 및 MS 또는 MS/FID를 이용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실내 및 시험 챔버 공기 중 휘발성 유기화합물 측정

(나) 측정결과의 표시단위는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에서 규정한 단위로 표시하고, 그 수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한 값으로 기록한다.

(다) 이 측정 방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UNECE의 Mutual Resolution No. 3(M.R.3) 기준, ISO나 KS 규격 및 통상적인 화학 상식 등에 따른다.

3. 적용 대상

이 측정 방법에 의한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측정은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에 의한 자동차 제작증 상의 제작년월일로부터 28 ± 5 일, 주행거리 80km이하인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작일로부터 28 ± 5 일 이내에 소비자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자동차의 경우 소비자 인도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4. 측정 대상 물질

측정 대상 물질은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3개의 카보닐 화합물(폼알데하이드, 아세트알데하이드, 아크롤레인)과 5개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 벤젠, 톨루엔, 자일렌, 에틸벤젠, 스티렌)로 한다.

5. 측정 장치

(가) 측정실은 측정조건에서 지정하고 있는 측정 자동차의 안정화 온도 및 측정시 온도를 유지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시료 채취 장치

(1) 시료채취용 흡인펌프는 측정하고자 하는 유량을 정확하게 채취할 수 있어야 한다.

a. 흡인펌프는 사용목적에 맞는 용량의 펌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유량의 안정성은 시료 채취시간 동안 5% 이내 이어야 한다.

b. 시료채취용 흡인펌프는 측정 전 유량을 보정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유량을 정확하게 채취할 수 있어야 한다.

c. 시료채취용 흡인펌프는 자동차 밖에 설치한다.

(2) 시료채취관

a. 시료채취관 길이는 가능한 짧게 한다.

b. 시료채취관의 재질은 불활성이며, 무방출, 무흡착 무흡수 재질이어야 한다.

c. 각 시료마다 개별 시료채취관을 사용한다.

(3) 카보닐 화합물의 경우에는 DNPH 카트리지를, 휘발성유기 화합물은 Tenax TA가 채워진 흡착관을 사용하여 시료를 채취한다.

(4) 필요한 경우 오존에 의한 간섭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순도의 요오드칼륨(KI)으로 충전 되어 있는 오존스크러버(Ozone scrubber)를 DNPH 카트리지의 앞부분에 직렬로 연결하여 사용한다.

(다) 시료 분석 장치는 카보닐 화합물의 경우 HPLC를, 그 외의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해서는 GC/MS를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6. 측정 진행

6.1 측정 조건 측정조건은 다음에 따른다.

(가) 측정자동차

(1) 측정자동차는 신규제작자동차를 사용한다.

(2) 측정자동차 운송 및 보관

a. 차 실내 공기순환조절 레버의 방향은 내부순환 위치에 놓는다.

b. 운송 전 차문과 창문에 봉인테이프를 부착하고, 운송 후 봉인 테이프 훼손여부 확인한다.

c. 운송 후 차 외부표면이 오염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척한다.

d. 측정자동차의 보관은 직사광선 및 오염물질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건물내에 차문과 창문을 닫은 상태로 보관한다.

(3) 측정 전 자동차 준비

- 차 실내 공기순환조절 레버의 방향은 내부순환 위치에 놓는다.
- 측정자동차의 출고시 붙어 있는 내부의 모든 비닐계 포장재를 최소 측정시작 24시간 전에 제거한다.
- 차내의 모든 문은 닫는다.
- 측정자동차는 측정을 하기 전 24시간 이상 상온(20~30℃)에서 온도안정화를 실시한다.
- 준비 과정에서 작업자에 의한 오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나) 측정실

- 측정자동차 안정화 및 측정시의 23~25℃(가능한 25℃에 가깝게), 습도는 $50 \pm 10\%$ 를 유지한다.
- 측정자동차 안정화 및 측정시의 온도 및 습도를 기록한다.

6.2 시료 채취 방법

(가) 시료채취 위치

- 측정실 및 자동차 운전석의 각 1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한다.

- 측정실(배경농도)의 경우 측정자동차로부터 1m 떨어지고 바닥으로부터 상부 1m 높이에서 시료를 채취한다.

- 측정자동차의 운전석은 뒤로 아래로 조정하고 핸들은 안으로 위로 조정한다.

- 측정자동차는 통상의 운전석과 핸들 위치에서, 핸들 상부와 운전석 머리지지대 연결부의 일직선상에서 핸들로부터 약 50cm 떨어진 위치에서 시료를 채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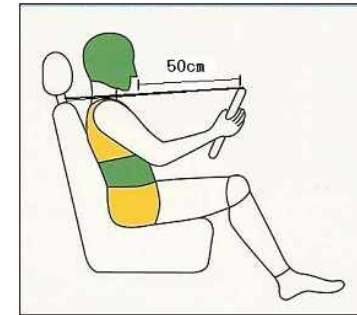


그림 1 측정자동차 시료채취 위치

(나) 시료수

- 측정실 배경농도에 대한 시료 채취는 1회 시험시 카보닐 화합물 1개와 휘발성유기화합물 1개의 시료를 채취한다.
- 자동차 운전석에 대한 시료 채취는 1회 시험시 카보닐 화합물 1~2개와 휘발성유기화합물 1~2개의 시료를 채취한다. 이

경우, 2개의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평균값을 사용한다.

(다) 시료 채취 시간 및 유량

카보닐 화합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시료 채취 시간 및 채취량은 표 1과 같다.

표 1. 시료채취 시간 및 채취량

측정항목	구 분	시료 채취 조건
카보닐 화합물 (Carbonyl compounds)	채취시간	20±10분
	채취유량	0.5~1ℓ/분
	채취량	5~30ℓ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채취시간	20±10분
	채취유량	100~200 ml/분
	채취량	1~6ℓ

(라) 측정 준비

- (1) 측정실의 온도는 23~25℃(가능한 25℃에 가깝게), 습도는 50±10%를 유지한다.
- (2) 측정자동차의 모든 문을 30~60분간 개방한다.
- (3) 측정자동차의 문을 개방하고 있는 시간동안 시료 채취관이나 온도 센서 등의 설치를 완료한다.

(마) 측정 진행

- (1) 측정자동차의 개방된 모든 문을 닫아 밀폐시킨다.

- (2) 16±1시간 동안 밀폐 유지 후 측정자동차 실내 및 측정실에서 시료를 채취한다. 이때, 시료 채취 시점은 측정 시작 시점을 말한다.

항 목	온도안정화	환기	상온밀폐	시료채취
진행시간	24시간	60분	16시간±1시간	20±10분

그림 2 측정 진행도

6.3 시료 분석 방법

- (가) 카보닐 화합물(폼알데하이드, 아세트알데하이드, 아크롤레인)

- (1) 시료보관 및 운반시 알루미늄호일 등으로 카트리지를 싸서 빛을 차단하여 4℃ 이하의 냉암소에 보관하며, 채취된 시료는 가능한 한 신속히 분석한다.

- (2) 분석방법

시료의 분석 방법은 KS I ISO 16000-3에서 규정하는 샘플분석 방법에 의한다.

- (3) 농도 계산

분석결과로부터 얻은 크로마토그램의 면적값을 검량선에 대입하여 채취된 시료 중 대상 카보닐 화합물의 농도를 산출한다.

$$C_A = A \times V \div Q$$

C_A : 자동차 실내공기시료 중 대상 알데하이드의 농도(μg/m³)

A : 자동차 실내공기시료 분석결과값(μg/ml)

V : 아세토니트릴 추출부피($\text{m}\ell$)

Q : 총흡인시료량(m^3)

(채취 종료 후 적산유량(m^3) - 채취직전 적산유량(m^3))

(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1) 흡착관을 사용하여 정해진 유량으로 포집된 시료는 만약 채취 후 1시간 이내에 분석하지 못할 경우, 외부 공기로부터 오염이 되지 않도록 밀폐용 마개와 PTFE 페럴을 이용하여 막아서 알루미늄호일 등으로 밀봉하여 실온에서 보관하며 이 시료는 신속히 분석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4주 이내에 분석하여야 한다.

(2) 분석방법

시료의 분석 방법은 [KS I ISO 16000-6](#)에서 규정하는 샘플분석 방법에 의한다.

(3) 농도계산

각 표준시료의 검량식에서 면적값에 대한 물질의 농도(A)를 구하고 다음 식에 의해 각 화합물의 농도를 구한다.

$$C_A = A \div Q$$

C_A : 공기 시료 중 각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mu\text{g}/\text{m}^3$)

A : 시료중의 각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중량(μg)

Q : 총흡인시료량(m^3)

(채취 종료 후 적산유량(m^3) - 채취직전 적산유량(m^3))

6.4 배경농도 기준

배경농도 기준은 각 오염물질에 대하여 최대 $20 \mu\text{g}/\text{m}^3$ 또는 각 오염물질 허용기준값의 최대 10% 중 작은 값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6.5 공시료 측정

(가) 공시료를 추가로 측정하여 시료운송, 보관 및 기타오염원으로부터 오염여부를 확인하며, 공시료 값은 정상적인 분석 피크의 10%이내이면 적당한 것으로 한다.

(나) 공시료(field blank)는 시료를 채취하지 않은 상태로써 [카보닐 화합물](#)의 경우에는 DNPH 카트리지, 휘발성유기화합물은 Tenax TA가 채워진 흡착관을 의미한다.

7. 측정 결과 처리

(가) 측정시 측정실의 배경농도 측정은 배경농도의 현격한 변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그 분석 결과

를 배경농도로 하고, 1일동안 1회의 측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록하고 그 중 최소, 최대치를 제외한 나머지 시료의 평균값을 최종 결과 값으로 사용하며, 배경농도 기준이 초과된 경우 재 측정을 실시한다.

(나) 결과 기록의 기록은 다음의 양식에 의거하여 기록한다.

[표 2]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기록표

차 명		제작회사	
제작일시		제원관리번호	
차량형식		차대번호	
측정일시		분석일시	
시험실 온도(℃)		차실내 온도(℃)	
시험실 습도(%)		차실내 습도(%)	
측 정 결 과($\mu\text{g}/\text{m}^3$)			
물질명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자일렌	에틸벤젠
		스티렌	아크롤레인
			아세트알데하이드
배경농도			
No. 1			
No. 2			
평균값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u>신규제작자동차의</u> 실내 내장재로부터 방출되는 인체 유해물질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u>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판매한 신규제작자동차의</u> 실내 내장재로부터 방출되는 인체 유해물질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규칙 제34조에서 정하는 자기인증 능력의 기준에 미달하는 제작자 등은 제외한다. 2. “신규제작자동차”란 규칙 제6장 및 제7장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자동차 자기인증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관련 별표 4 ‘자동차 제원관리번호 부여기준’에	제2조(정의) ----- ----- 1. “대상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에서 정하는 자기인증 능력의 기준에 미달하는 제작자 등은 제외한 규칙 제31조에 따른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2.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 -----

현행	개정안
따라 부여되는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번호가 부여되거나 그 최초번호가 변경된 자동차를 말한다.	----- ----- ----- -----.
3. 삭제	<삭제>
4. 5. (생략)	3. 4. (현행과 같음)
<신설>	5. "조사대상자동차"란 국내에 서 판매되는 신규제작자동차 로 측정대상자동차와 확인대 상자동차를 말한다.
<신설>	6. "측정대상자동차"란 당해 연 도 자동차안전도평가 및 자기 인증적합조사 대상차종으로 선정된 자동차 중 별표2에 따 라 제작일로부터 28±5일 이내 에 실내공기질 측정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작 일로부터 28±5일 이내에 소비 자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자동차의 경우 소비자 인도시 점 기준으로 측정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신설>	7. "확인대상자동차"란 측정대 상자동차를 제외한 조사대상 자동차로 대상자동차제작·관

현행	개정안
	매자등이 제작일로부터 28±5 일 이내 또는 소비자 인도시 점에 측정한 결과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자동차를 말한 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관리기준 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하며, 국내에서 연 간 500대 이하로 판매되는 자동 차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관리기준 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1. 승용자동차	1. 승용자동차(초소형승용자동 차 제외)
2. 경형 및 소형 승합자동차(특 수형 제외)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이며 차 량총중량 3.5톤 이하인 승합자 동차(특수형 제외)
3. (생략)	3. (현행과 같음)
제5조(자동차 제작·판매자등의 고려사항) ① 자동차 제작·판 매자등은 자동차 제작·조립 또 는 판매시 내부 마감재는 폼알 데하이드 및 벤젠 등 권고기준 에서 제시하는 물질을 포함한	제5조(대상자동차제작·판매자등 의 고려사항) ① 대상자동차제 작·판매자등----- ----- ----- -----

현행	개정안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량 또는 방출량이 최소화된 자재를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
② 자동차제작·판매자들은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부록의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측정 방법’에 수록되어 있는 결과기록표에 기록하여 5년간 보존하고, 양산 또는 판매되는 자동차의 실내공기질이 지속적으로 권고기준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대상자동차제작·판매자들----- ----- ----- ----- ----- ----- ----- ----- ----- ----- --.
③ 자동차 제작·판매자들은 자동차사용자가 실내공기질 유지를 위해 적절한 환기 등의 조치를 행할 수 있도록 자동차 취급 설명서 등에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③ 대상자동차제작·판매자들----- ----- ----- ----- ----- ----- ----- ----- ----- ----- --.
제6조(권고기준 준수 확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1년마다 <u>오염물질을 채취하여</u> 권고	제6조(권고기준 준수 확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1년마다 <u>측정대상자동차를 대상으</u>

현행	개정안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에게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확인 대상 차종이 결정되고 실제 측정 차량의 선정 시 해외에서 제작·수입되어 제작일로부터 28±5일 이내에 신차공기질 측정이 불가능한 자동차의 경우 최초제작사에서 별표2의 [표2] 실내공기질 결과기록표를 제출받아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u>로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확인 대상자동차의 조사 결과를 검토하는 방식으로</u> 권고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u>대상자동차제작·판매자들에게</u>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단서 삭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권고기준 준수 여부의 확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으며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 제작사에게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아 자료를 제출하려는 대상자동차제작·판매자들은 별표2에 따라 대상 오염물질을 측정한 후 별표2의 [표2] 실내공기질 결과기록표와 측정에 관한 자료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신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1항의 모든 평가 대상 오염물질 중 어느 하나라도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내 내장재의 개선이나 대체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

현행	개정안
<신설>	할 수 있으며, 대상자동차제작·판매자들에게 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대책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의2(추가시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권고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한 결과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대상자동차제작·판매자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상자동차제작·판매자들의 요청에 따른 추가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대상자동차제작·판매자들이 제공하는 시험자동차 및 시험비용을 활용하여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동차제작·판매자들의 생산·출고시설에서 권고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와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무작위로 선정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추가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평가 대상 오염물질을 모두 측

현행	개정안
<신설>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추가시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6조의3(추적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 또는 제6조의2에 따라 권고기준 초과가 발생한 자동차의 지속적인 추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해당 자동차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성능시험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대상자동차제작·판매자들의 협조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적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권고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와 동일형식의 자동차의 실내공기질 자체 측정 및 분석결과 2. 제6조제3항에 따른 권고사항과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한 이행여부

현행	개정안
<신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추적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6조의4(연간계획의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권고기준 준수 확인, 제6조의2에 따른 추가시험, 제6조의3에 따른 추적조사를 하기 위해서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매년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한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조사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게 할 수 있다. 1. 측정대상자동차 대상 및 확인대상자동차 선정 기준 등 조사대상자동차의 범위 2.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조사 항목·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추가시험 및 추적조사에 대한 사항 4.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	제9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현행	개정안
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